

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각 용도지역에 규제되고 있는 건축제한을 완화하여,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, 상위 법령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, 또한 「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」 운영에 따른 조례사항을 반영해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」 운영에 따른 조례사항 반영(안 제18조의4)
-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
 -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확약서로 갈음(안 제32조)
- 상위법령 현행화 및 용어 정리(안 제54조, 안 제59조의2, 안 제60조, 안 제64조, 안 제66조, 안 제67조의2, 안 별표27)
- 각 용도지역·지구 별 건축 제한 완화(안 별표14, 안 별표15, 안 별표16, 안 별표17, 안 별표18, 안 별표19, 안 별표20, 안 별표21, 안 별표22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「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종합허가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현행화하고, 각 용도지역·지구 별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,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, 상위법에 따른 법률 용어와 규정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였음.
- 또한, 각 용도지역·지구 별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